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49
----------	------

발의연월일 : 2016. 11. 3.

발의자 : 함진규 · 최경환 · 이학재

정용기 · 박찬우 · 박덕흠

이해찬 · 윤후덕 · 주승용

황희 · 이명수 · 강석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청이 조성하거나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한 도시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추가사업을 실시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한 시설 등을 유상으로 재매입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건설청에 이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관리전환 재산의 특례)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u>제46조의3(관리전환 재산의 특례)</u></p> <p><u>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장은 예정지역</u></p> <p><u>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u></p> <p><u>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u></p> <p><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u></p> <p><u>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u></p> <p><u>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u></p> <p><u>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u></p> <p><u>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u></p>